

『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150백만원(4차년도 소요예산)
 - 출연 필요성
 -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
 -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
 - 출연근거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 - 「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코자 설립된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(150백만원), 2015년(150백만원), 2016년(150백만원)에 이어 4차년도인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150백만원을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3. 1월 출범 후, 2014년부터 시작한 스리랑카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와 새마을 조직 및 환경 교육, 봉재사업 등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새마을운동 중흥지인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